

색채상표등록과 관련된 유럽의 최근 사례

유럽재판소(ECJ)에 제소되었던 네덜란드 통신 회사 Libertel의 베네룩스상표청에 대한 색채상표출원거절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서 지난 5월 6일 유럽재판소 Leger 법률고문관(Advocate General)의 의견서 제시가 있었다. Libertel은 동사의 telecommunication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렌지색을 상표로 출원했었다. 동사는 출원절차상에서 “오렌지색”에 대한 설명을 어떠한 색상에 의한 표시 없이 단순히 “오렌지”라는 단어로 표현한 바 있다.

유럽공동체 상표지침(EU Trade Mark Directive)에 따르면 상표는, i) 표식(sign)이어야 하고 ii) 시각적으로(graphically)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iii) 한 사업의 재화와 용역이 다른 사업의 그것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Leger 법률고문관의 의견을 요약하면, 단순한 견본 색상 자체의 제출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색상이 변하는 등의 이유로 지침상의 “시각적 표시”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수 없고, 나아가 색상 설명의 경우 객관적인 색상표 등 코드의 인용없이 단순한 서술만으로는 그 또한 “시각적 표시”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동 의견서에서 Leger 법률고문관은 Libertel사의 단순한 오렌지색이라는 서술적 설명으로는 지침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Leger 법률고문관은 단순한 색상의 이름만으로는 명백하고, 정확하며, 자기 충족적이고(self contained),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각 가능하고, 영속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하는 상표의

설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경쟁사들에게 당해 상표의 보호범위를 불확실하게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Pantone System 같은 색상표를 이용하여 그 코드를 인용하여 색상을 설명한다면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ECJ에는 8명의 법률고문관이 있고 이들의 의견은 당해 사건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나 재판관들이 그들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한다. 따라서 이번 Leger 법률고문관의 의견제시는 비록 당사자인 Libertel사의 상표등록에는 부정적이지만 유럽상표법상 색채상표가 그 설명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색상표 등을 사용한다면 등록가능할 것이라는 앞으로의 ECJ의 입장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출처 Mondaq

Mailblocks의 안티 스팸메일 특허 침해 소송, 지방 법원이 가금지 청구를 기각

Mailblocks가 라이벌 기업의 Spam Arrest에 특허 기술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가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던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주의 지방 법원은 Mailblocks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Mailblocks는 challenge-response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안티 스팸메일 소프트웨어를 릴리스 하고 있다. Mailblocks는 6,199,102 (1997년 신청) 2개의 특허를 취득하였다. challenge-response 기술은 수신 허가 리스트

특허등록과실로 인해 1억 8천만엔의 국가배상책임부담

시즈오카(静岡)지방법원은 건설회사가 가진 특허권이 인정된 교량공사의 공법을 담보로 융자하였는데, 특허청이 나중에 접수한 특허권이전신청을 잘못하여 먼저 등록함으로써 그 특허권의 질권 설정등록이 무효로 되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静岡 신용금고(본점 시즈오카市)가 국가를 상대로 3억 6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1억 8000만엔의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97년 8월 시즈오카시에 있는 건설회사에 3억 6000만엔을 융자할 때

동 회사가 취득한 특허권을 담보로 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9월 3일에 특허청에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을 했지만 동 회사는 다른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16일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신청됐다.

이 특허는 다리건설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기술로서, 1996년에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재판부는 질권의 등록이 지연된 점에 관하여 「특허원부예의 등록은 접수한 순서로 정하고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된다」하고, 게다가 이전등기의 시점에서 특허권이 약 3억엔의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특허청의 실수가 없다면 질권은 그 60%인 약 1억 8000만엔 상당이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넷케이신문,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송신자에 대해, 질문을 보내 회답을 요구한다. 자동 전달 소프트웨어에 의한 SpamMail등은 질문에 회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동사는 이러한 특허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법원은 특허 침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Spam Arrest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은 그 이유로써 「Mailblocks는 가금지 명령의 요구가 기각될 경우에 동사가 지는 회복 불가능인 손해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Spam Arrest는 「Mailblocks의 특허는 무효다.

challenge-response 기술은 “선행 기술”, 즉

Mailblocks가 특허를 취득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Mailblocks가 EarthLink 등에 대해 하고 있는 유사한 특허 소송을 하나로 모아 다관할 지역 소송에 관한 미국 법률 평의회 Multidistrict Litigation Panel에서 심의하는 것을 요구했다. SpamMail은 IT업계에 있어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메일 프로바이더나 메일 소프트웨어는 차례차례 스팸메일 방지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ilblocks는 특허권 보호를 위해 EarthLink나 MailFrontier 등의 기업을 제소하게 되었다.

출처 onet

**미국, CAFC 유전공학사건에서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명확히 하다**

미국 CAFC는 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Inc. and Trans Karyotic Therapies, Inc., 314 F. 3d1313(Fed. Cir. 2003)사건에서 미국특허법상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가능요건에 관한 종전의 판례법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조작된 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졌다.

실시가능요건 및 상세한 설명기재 요건으로 35U.S.C.112조 첫 번째 문장에는 실시가능요건과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에는 발명 및 그 제조, 사용에 관한 방식 및 과정의 설명을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제조,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간단명료하고 적절한 용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발명자에 의해 생각되어진 최선의 실시예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명자는 당업자가 "부당한 실험" 없이 발명을 어떻게 제조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명세서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은 특허권자가 나중에 그의 특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명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공학 및 의약분야에서의 명세서기재요건을 설명해주는 주요판례는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 Co., F.3d 1559(Fed. cir. 1997)이다. 이 사건에서 CAFC는 DNA에 대하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특허는 DNA서열 그 자체의 정확한 정의를 요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DNA의 기능에 대한 단순한 인용 혹은 DNA를 분리하는 방법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CAFC는 이 판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CAFC는 Enzo Biochem, Inc., v. Gen-Probe, Inc., 296 F.3d 1316, 63 U.S.P.Q. 2d사건에서 처음에는 기탁된 생물물질은 충분히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 청문에서 기탁물이 구조와 기능 사이의 알려진 상호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은 특허청구된 물질의 기능적 설명에 의해 만족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CAFC는 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Inc. and Trans Karyotic Therapies, Inc., 314 F. 3d 1313(Fed. cir. 2003)사건에서 실시가능요건이 결여되고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의 신청이 있는 넓은 특허청구범위를 지지하였다.

Amgen사건은 Eli Lilly사건에서의 법원의 이 전결정에 변형을 가하고 재해석을 하였으며, Enzo II사건에서 시작된 경향을 따름으로써 유전공학분야에서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여주고 이 분야에서의 기존특허의 집행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www.mondaq.com

Taxol 관련 특허에서 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자에 대한 CAFC 판결

사건명 : Board of Education v. American Bioscience, Inc. 02-119

원고 겸 피항소인 : The Board of Education(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신탁 위원회를 대변), MDS Research Foundation, Inc. 그리고 Taxolog, Inc.

피고 겸 항소인 : American Bioscience, Inc.
(구 Vivorx Pharmaceuticals, Inc.)

주문 (Lourie 판사) : American BioSci-ence, Inc. (ABI)는 Board of Education 등이 제기한 발명자에 관한 소송에서의 Florida 북부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다. 원심 판결은 미국 특허 제5,780,653호(이하 '653 특허)에서 3명의 발명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1명은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3명의 발명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특허가 특허청에 대한 정보미공개의 부정한 행위(inequitable conduct)로 인하여 집행불가능(unenforceable)하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방법원이 발명자의 결정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CAFC)는 동 사건을 일부 확정, 일부 파기, 일부 무효로 하였다. 참고로,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발명물인 Taxol(=paclitaxel)¹⁾은 대서양 주목(朱木)의 껍질에서 발견되는 자연산 복합물로, Taxol은 항암 약품으로서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 과학자들은 taxol이 효과적인 화학 요법제로서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저항이 있는 암세포, 특히 산소결핍(hypoxic)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치료의 효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92년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은 세포화학적독소(cytotoxic) 및 방사선감작제(radiosensitizing agent)로서의 taxol의 이중 활동을 공개하였다.

경과 및 결과 : '653 특허는 Chunlin Tao, Neil Desai, Patrick Soon-Shiong 그리고 Paul Sandford의 이름으로 출원되어 Vivorx Pharmaceuticals, Inc. (현재 American Bio Science, Inc. (ABI), 본 사건의 피고 및 항소인)에게 양도되었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플로리다 주립 대학(Board of Education) 3명의 과학자(Tao, Soon-Shiong, 그리고 Desai)들이 '653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되어야 했으며, 이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1명의 과학자를 포함한 3명의 ABI 과학자(Holton, Nadizd도, Yang 그리고 Sandford)는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항소 법원은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은 주장되고 있는 구체적인 발명을 고안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들은 “완전하고, 실시되고 있는 발명에 대한 명확하고 영구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결도 기각되었는데, ABI 발명가가 이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특허성 여부에 실질적인(material)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653 특허가 부정한 행위(inequitable conduct)로 인하여 집행불가능(unenforceable)하다²⁾고 한 원심의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고 CAFC는 판결하였다.

출처 ipo daily news/lexis.com

1) "Taxol"은 paclitaxel에 대한 Bristol-Myers Squibb의 등록 상표이다.

2) 미국 특허상표청에서의 부정한 행위(inequitable conduct)는 특허 전체를 집행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 발견은 ① 실질적인 선행 기술 혹은 특허 심사관에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정보, 그리고 ② 심사관을 오도하려고 한 출원인의 의도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 의무는 출원부터 등록 및 기간 연장 등 특허의 전과정을 통하여 작용한다. (「특허정보의 활용·확산 정책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용역 보고서)실례로 특허출원시 특허청에 특허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특허소송에서 무효로 된 실례가 있다.

- 관련 법령

37 CFR 1.56 : 특허성 관련 실질적인 정보 공개 의무(Duty to disclose information material to patentability)

37 CFR 1.97~1.98 : 정보공개진술서 (IDS :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액션 게임 Postal을 둘러싼 상표권 소송에서 USPS 패소

잔혹한 액션 게임 「postal」과 속편 「postal 2」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우정공사 (USPS)가 Running With Scissor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상무성 상표 심판부는 이것을 기각했다고 Running With Scissors측이 발표했다.

「postal」은 플레이어가 무기점을 습격해 피스톨이나 라이플을 빼앗아,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주민을 무차별하게 살육한다고 하는 잔혹한 슈팅 게임으로 97년에 발매되었는데 그해에 이미지를 해친다고 판단한 USPS가 상표권 침해로 제소하였다. postal의 명칭은 「go postal」(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컨트롤을 잃는다)이라고 하는 은어로부터 취했다고 한다.

이 용어 자체는 90년대 초 우체국직원이 일으킨 살상 사건이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동계임은 슈팅 게임에 비교적 너그러운 미국에서도 잔혹함이 문제가 되어 판매 금지된 경위가 있다.

Running사는 그 후 속편 「postal 2」를 개발하여 현재도 판매중이다.

출처 hotwired

최근 미국판례에서의 “실험적 사용 (Experimental Use)”에 대한 판단: Madey v. Duke University

사실관계 : 미국Duke대학교의 정규연구교수 (tenured research professor)였던 John Madey는 ‘자유 전자 레이저 기술(free elec-

tron laser technology)’ 과 관련된 두 특허의 단독소유자였으며 Duke대학교 안에 자유 전자 레이저 실험실을 운영하였고 동 실험실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실험기자재를 사용하였다. Duke대학교와 Madey교수 사이에 어떤 분쟁의 결과로 Madey교수는 그 실험실의 책임자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나아가 Duke대학교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한편 Duke대학교는 동교수의 사임 후에도 위의 실험실에서 위의 기자재를 계속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Madey교수는 자신의 특허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판결 : Duke대학교는 위의 기자재의 사용은 오랫동안 법원에 의해서 특허침해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실험적 사용”원칙에 따라서 허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실험적 사용”의 예외는 “오로지 연구, 학문 혹은 실험적 목적의 사용에 국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Madey교수는 위의 실험실은 그 성격과 취지가 상업적이라고 주장하였다.

Madey교수는 또한 Duke대학교의 특허정책을 인용하면서 Duke대학교가 학문적 연구 결과의 가능한 상업적 응용을 개발하고 보조금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Madey교수가 Duke대학교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면 Duke대학교의 특허정책과 관련하여 “수업과 연구 그리고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고 특허나 상업적인 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나 개발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적인 규정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는 기각되었다.

CAFC 판결 : CAFC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 “실험적 사용”에 대한 훨씬 좁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CAFC는 지방법원의 “실험적 사용”의 해석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된 것이며 “실험적 사용”의 원용은 “재미로(for amusement), 평범한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새 satisfy idle curiosity), 혹은 엄격한 철학적 물음을 위하여(for strictly philosophical inquiry)” 사용할 경우에 제한된다고 한다.

또한 CAFC는 “여하튼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사용과 상업적인 의미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적법한 사업을 점유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프로젝트가 상업적이진 않더라도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대학은 학생과 기관(faculty)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학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풍족한 보조금과 학생과 기관을 모집하는 본연의 적법한 사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Duke대학교는 Madey교수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결론: 위의 Madey사건은 “학문연구자는 실시권 없이 특허된 물질이나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관념을 잠재웠다.

반대로 본질적으로 비 상업적이고 기본적인 학문 연구라 할지라도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듀크대학교는 미연방 대법원에 CAFC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하였다.(이 문건의 날짜까지 대법원은 이러한 재검토 청원자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출처 Mondag

「花粉のど飴」를 둘러싼 상표소송

「花粉のど飴」 굳이 풀어쓴다면 ‘꽃가루 목캔디’ 정도로 해석된다. 상표의 독점사용이 허용된 카마야식품(원고, 岡山市)이 동일 명칭「花粉のど飴(あめ)」를 발매한 사쿠마제과(피고, 東京都)에 대하여 2002년 5월 상품명사용금지과 600만엔의 손해배상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경지방법판소는 6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해서 캔디류에 「花粉」의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약 50만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01년 8월 과자, 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花粉」의 상표권을 갖는 信州蜂蜜본점과 「花粉のど飴」에 관한 상표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1년 1월 원고보다 먼저 「花粉のど飴」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경부터 약 6개월간에 27만개를 판매했다.

피고는 花粉症대책용 캔디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花粉のど飴는 화분증에 효과가 있는 캔디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가 「花粉のど飴」이라고 하는 상품명과 「花粉」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독립된 낱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법원은『花粉』이라는 문자가 상품을 식별하는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피고의 상품명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아시아신문, 시사통신인터넷판

지재권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지재권 연구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타인에 대한 배포, 전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특2003/8

리얼네트웍스·리슨닷컴, 음악스트리밍 특허침해 소송

리얼네트웍스와 자회사 리슨닷컴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특허권 침해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개인소유의 기술특허회사인 프리스킷은 이날 디지털미디어 소프트웨어업체인 리얼네트웍스와 이 회사의 온라인 음악사업부인 리슨닷컴이 자사가 소유한 온라인 스트리밍기술 3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기술사용에 대한 영구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프리스킷은 접수한 소장에서 스트리밍 관련기술은 승인을 받았으며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만달러가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료 음악서비스 랩소디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네트웍스와 리슨닷컴은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곤란에 빠진 회사가 언론을 이용해 살 길을 모색하는 치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리슨닷컴은 이날 랩소디사이트의 음악다운로드 이용료를 지난 5월말 CD 1개당 99센트에서 79센트로 인하한 이후 회원들의 이용률이 거의 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슨닷컴에 따르면 랩소디에서 다운로드된 음악은 하루평균 35만곡 이상으로 전체적으로는 1100만곡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랩소디는 유료음악사이트 가운데 편리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나 한번도 정확한 회원수를 밝히지 않았다. 애널리스트들은 랩소디의 회원이 적어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피지, 8개월간 법정공방 승소

전 자식 프로그램가이드(EPG)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인 이피지(대표 서조황)와 가이드채널(대표 신기현)간에 벌어진 8개월 간의 법정 공방이 이피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현)는 가이드채널이 경쟁 업체인 이피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널별·시간별 프로그램 정보를 동영상과 함께 보여주는 EPG서비스 기술에 대해 “디지털방송사업 관계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영업 비밀로 보호할 만한 경영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피지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의 갈등은 이피지가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가이드채널은 한때 협력을 논의했던 이피지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청구했고, 이피지는 곧바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으로 맞대응을 했다.

이에 가이드채널은 다시 한번 이피지를 상대로 ▲아날로그 단방향 EPG 서비스의 개념 ▲초고속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방식 ▲구현형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피지 관계자는 “좁은 시장을 두고 벌어진 과열경쟁으로 본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의 경우 항고해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는 법률 자문을 구한 만큼 일단 영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모바일게임 상표권 다툼

게 임업계의 상표권 분쟁이 모바일게임 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모바일게임 개발 전문업체 이지네고(대표 윤효성)는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게임 '브레인 서바이버'와 유사한 명칭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쓰리넷(대표 성영숙)에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네고는 네트워크 카드게임인 '브레인 서바이버'와 관련해 게임 기획을 완료하고 상표권 출원 신청을 마쳤으나, 이쓰리넷이 거의 동일한(브레인 서바이벌) 명칭의 모바일게임을 서비스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쓰리넷에서 만든 '브레인 서바이벌'은 휴대폰 이용자 4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제한된 시간에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다.

이지네고에서 서비스를 준비 해온 '브레인 서바이버'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카드 뒤집기 게임을 응용한 두뇌 게임이다. 이지네고는 게임 서비스에 앞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쓰리넷에 게임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쓰리넷은 '브레인 서바이벌'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불가'를 통보해 왔다.

오히려 이 회사는 이지네고의 변경 요청 이후 '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으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지네고가 출원 신청해 놓은 상표권은 '국제상품분류 9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려받기 가능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부터 상표권 등

록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빠르면 3·4분기 내에 권리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쓰리넷의 게임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된다해도 이지네고보다 늦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모바일게임에 앞서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도 동일한 게임 명칭으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등록을 먼저 추진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이지네고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필&온지의 김상우 변리사는 "브레인 서바이버와 외관·칭호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한 '브레인 서바이벌'은 상표권 9류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는 상표권 도용을 중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코비스, 사진·음악파일 특허침해 아마존닷컴 제소

MS빌 게이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제공업체 코비스가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코비스는 이날 시애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닷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자사 소유의 사진과 음악파일을 임의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특허침해된 사진파일 장당 15만 달러를 피해보상액으로 청구했다.

신문은 코비스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아마존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사진파일들을 삭제

했다고 전했다.

코비스는 그러나 아마존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사진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사는 특허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가을 이래 지금까지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MP3P 특허분쟁 '새국면' 연기 '코스닥 심사 연기'

MP3플레이어(MP3P) 특허문제가 결국 레인콤(대표 양덕준)의 코스닥 등록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3년여간 끌어온 MP3P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코스닥 등록심사부는 “당초 레인콤의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MP3P 특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인콤은 당초 계획했던 코스닥 행을 위해서는 특허권자인 애플맨닷컴(대표 전춘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코스닥 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애플맨닷컴은 레인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레인콤 측은 “등록심사부가 예비심사 일정을 연기한 것은 해당 특허문제가 코스닥 등록에 과연 중요한 사안인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 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애플맨닷컴과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을 반증한 것 아니냐”며 “소송을 취하해야만 협

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맨닷컴 측은 자사의 MP3P 특허의 위상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간 레인콤은 애플맨닷컴의 특허를 침해해 수익을 거둔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다”며 “작년 7월에는 수출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거원·현원 등 5개사와 대당 25센트라는 저렴한 수준의 로열티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른 만큼 이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 한국인삼공사, 특허권 법정 다툼 '눈길'

건강 기능 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간 특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방 바이오 벤처인 한국의과학연구소와 한국인삼공사 간 법정 싸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국인삼공사가 시판 중인 ‘레드맥스’를 상대로 대전 법원에 ‘특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공판이 실시된다.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국인삼공사의 ‘레드맥스’가 자사 제품 ‘천보204’의 구성물질을 도용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연구를 완성하고 상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유치를 위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제휴를 추진하면서 경영 정보와 특허 자료들을 KT&G에 제출, 정보를 공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연구소 측 주장이다.

상호간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 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에서 연구기술과 특허정보를 이용해 한국 의과학연구소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레드맥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는 것.

한국의과학연구소 황성연 사장은 "벤처기업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특허를 공기업이 무단침해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꿈을 짓밟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 측은 "레드맥스는

200여명의 연구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고, 의과학연구소가 주장하는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신기술이 아닌 만큼 특허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특허권 무효 심판 소송'을 청구,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의학·의학·생명공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임상의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한방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천보204'는 특허청의 2002년 100대 우수특허제품을 선정됐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회원동성

삼성전자

삼성전자, 중국 TFT-LCD 모듈라인 가동, 수조우市 LCD 모듈라인 양산 시작, 중국시장 대응력 강화

삼성전자 중국 TFT-LCD 모듈라인이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상완 사장(LCD사업부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강소성 소주시 공업원구(中國 江蘇省 蘇州市 工業園區)內 위치한 SESL법인(Samsung Electronics Suzhou LCD., Ltd.)에서 제품 출하 기념행사를 가졌다. TFT-LCD 생산은 총 5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이 가운데 前공정에는 1)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 기판을 제조하는 TFT-Array 공정 2)컬러필터 소자를 제조하는 Color-Filter공정 3)TFT-Array 기판과 컬러필터 기판 사이에 액정 셀을 형성하는 액정공정이 해당된다.

또 後공정으로는 4)각 공정에서 제작한 LCD패널, 구동회로, 백라이트 등

을 하나의 LCD 모듈로 제작하는 Module공정 5)완성된 제품의 검사 및 출하공정으로 나뉘는데, 중국 생산라인은 後공정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21세기 IT산업의 최대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산업단지인 수조우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2년 10월부터 중국 TFT-LCD 모듈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건물은 5월에

기흥-천안-아산-수조우, 생산거점별 특화체제 완성
2004년 800만대 생산 규모, 전체 생산량의 30% 처리 가능

완공됐고, 2개월간 시생산을 통해 생산라인과 품질 안정화를 확보했다.

지금까지의 투자금액은 634억원.

삼성전자는 올해 月 10만대 규모로 15인치와 17인치 모니터용을 주로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年 800만대로 생산량을 확대해, 삼성전자의 전체 생산량의 30%를 중국공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기흥(1, 2라인)과 천안(3, 4, 5라인)에 TFT-LCD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소형 제품군은 기흥 △모니터용 제품군은 천안 △TV용은 아산 탕정에서 △수조우에서는 노트북용과 보급형 모니터용의 모듈공정을 생산하는 『거점별 특화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LCD 생산량의 9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중국 LCD 모듈라인 가동으로, 시장밀착형 생산체제를 갖춰 현지 거래선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욱 SESL 법인장은 "중국 TFT-LCD 모듈공장은 중국 IT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이며, 이번 생산라인 가동으로 중국업체들과 중국 현지에 진출한 거래선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TFT-LCD 시장이 연평균 52%의 급성장세를 보이며, 2004에는 3천4백만대의 시장을 형성해, 세계시장의 30%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